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点과 補完對策* - 產地 魚市場制度를 中心으로 -

金 昇**

Problems and complementary Measures from the Overall
Enforcement of Free Market System
- Fish Markets in the Production -

Kim, Seung

目 次	
I. 序 論	1. 沿近海 水產物의 流通段階 短縮
II. 水產物 生產 및 流通實態	2. 水產物 自由販賣制와 產地魚市場 機構改編
1. 水產物 生產 및 流通實態	3. 公正性과 公平性의 問題
2. 水產物 生產 및 產地流通	V. 自由販賣制 實施에 따른 補完對策
III. 水產物 產地魚市場의 機能과 役割	VI. 結 論
1. 漁業經營의 特殊性과 產地魚市場	参考文獻
2. 產地魚市場의 機能과 役割	Abstract
IV. 水產物 流通時策의 現實的 問題點	

I. 序 論

沿近海 水產物 流通制度로서 일제초부터 장기간 시행해 왔던 產地 義務上場制를 1994년 12월 1일부터 미역, 파래, 동죽, 고막, 활어, 도미, 넙치, 가자미, 문어, 꽃게 등 10개 품목에 대해 自由販賣制로 전환하여 시범 실시키로 함¹⁾에 따라 생산어민이나 유통관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범실시 기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한 뉴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1995년부

* 본 논문을 1994. 12. 3. 여수 수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수산경영학회와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 연구 소가 공동 주최한 수산정책 심포지움(水產物 自由販賣制의 導入과 推進方向)의 주제 발표 논문(일부 자구수정 정리)임.

** 신안군 수산업 협동조합 전무

1) 수산청 훈령 제 614호(1994. 11)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령 제 21조 규정에 의한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지정 등에 관한 사무취급 요령의 개정시행에 따름

터 施行品目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97년까지 沿近海 水產物 全品目을 自由販賣制로 전환시킬 계획²⁾이라고 하니 水產物 流通에 일대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沿近海 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의 혁신적인 정책전환이 우리 沿近海漁民과 水產業 振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또한 그로 인한 水產物 流通構造의 變化가 政策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順機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5공화국 시절과 같이 추진했던 施策들이 오히려 근본을 망쳐놓은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는데 예를 들면 校服自律化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련지 우리 수산인들 모두가 한번쯤 고민하고 재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다. 왜냐하면 水產物 流通構造改善에 대한 文民政府「新農政計劃」의 의사결정 방법이 5·6공보다 훨씬 경직스러우며 水產業과 水產物 流通現實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水產物을 農產物에 포함시켜 전개하는 農業經濟學者들의 流通理論³⁾을 수산당국이 신중한 검토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新農政의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법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沿近海 水產物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流通構造改善策을 관련 어민과 유통관계인 합의에 의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의 水產政策 심포지움은 이제까지의 施策 推進過程에서 水協 때문에 問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되었던 水產物 流通施策의 現實的인 問題點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는 데 연구방향을 두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水產物 生產 流通實態를 살피고 水產業과 水產物 및 漁業經營의 特殊性에서 나타나는 流通現實과 產地 委(共)販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제까지 정책당국이나 수협중앙회가 任意上場제 전환시 예상되는 問題點과 改善方案으로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가급적 논의를 생략하고 水產業과 水產物 및 漁業經營의 特殊性에서 나타나는 流通現實과 產地魚市場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본질적인 역할의 상호 관련성을 비교하여 당국이 추진중인 유통시책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연근해 어민과 水產業 振興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사항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았다.

Ⅱ. 水產物 生產 및 流通實態

1. 水產物 生產 및 產地流通

水產物은 水界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자원으로 개발이용하는 산업이며 수산업이 개발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水產資源은 無主物 共有資源으로 인식되는 생물자원이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水產資源을 개발 이용하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資源을 규제하는 규칙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이 申告와 許可漁業制度(水產業法 제41조, 44조)이며 장소(漁場)를 규제하는

2) 신경 제5개년 계획(93년 7월)의 행정규제개혁 부분 농림수산분야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임.

3) 金 昇,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월간 양식산업 1994년. 9월호), p. 67 참조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点과 補完 對策

규칙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이 免許漁業制度(水産業法 제8조)이다. 또한 水産業法 제 5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免許, 許可 또는 申告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은 위와 같은 규칙에 의거 이루어지고 생산된 수산물은 水産業法 제 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와 수산자원 보호령 제19조(어획물의 양육제한), 제21조(어획물 판매장소의 지정)에 의거指定된 港口에 양류하고 양류된 水產物은指定된 場所(委販場)에서 販賣去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와 판매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매매 교환도록 규제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資源 保護 및 不正漁業 방지를 위하여 양류 항구와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일시 다량으로 양류되는 수산물의 집하 및 신속한 분산처리로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產地 委販場이나 共販場의 運營管理를 수협이 담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沿近海에서 생산되는 水產物은 이론상 전량 水協을 통한 계통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現實은 漁業別이나 어종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特定 品種이나 特定 漁業에 대해서는 현행 水產物 產地 流通制度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도 상세히 분석되겠지만 1992년말 현재 沿近海 水產物의 생산 및 계통판매 실적은 <표 2-1>과 같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沿近海 漁船漁業에서 이루어지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계통판매율이 높은데 반해 養殖水產物에 있어서는 계통판매율이 저위수준에 머무르고 거의 태반이 비계통거래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 연근해 수산물 생산 및 계통판매 현황(1992) (단위 : 톤)

구 分	총 生 산 량(A)	계 통판매량(B)	비 계통거래량(C)	계 통판매율(B/A)
계	2,230,874	1,532,810	698,064	68.70
연 근 해 어 업	1,295,396	1,082,054	213,342	83.53
천 해 양 식 어 업	935,478	450,756	484,722	48.18

자료 : 수산년감(한국수산회), 1993.

2. 水產物의 流通經路 및 流通比率

모든 상품은 生產 - 流通 - 消費 過程의 Cycle을 밟는다고 볼 때 상품의 流通은 生產 및 消費의 主體에 따라 다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少數者生産)—————(少數者消費) 1
- (少數者生産)—————(多數者消費) 2
- (多數者生産)—————(少數者消費) 3
- (多數者生産)—————(多數者消費) 4

그중 「多數者 生産 - 多數者 消費」에 속하는 상품은 農水產物로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集荷 - 搬出 - 分散」 등 過程을 여러 차례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른다. 특히 水產物은 강한 부패성

수산경영론집

을 가지고 있고 季節性과 一時多獲性으로 양륙되는 어획물의 집하 및 신속한 분산처리가 요구되고 양륙되는 港口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어업 경영의 특성 때문에 生產에서 消費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流通段階와 流通經路를 거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현실적인 流通經路와 유통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流通去來 比率

沿近海漁船漁業에서 양륙되는 어류는 계동판매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법적으로는 水協의(委)共販場을 통해 거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輸出, 自家消費, 現地去來 및 소비지 밀반출 등으로 천해 양식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양륙량의 태반이 비계통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연근해 수산물 유통거래 비율(1992. 12. 31 현재)

(단위 : 톤, %)

구 분	총 계	연 근 해 어 획 률					천해양식 수 산 물
		계	어 류	갑 각 류	연체동물	기 타	
생 산 량	2,230,874	1,295,396	892,762	111,726	259,787	31,121	935,478
계동판매량	1,532,800	1,082,054	812,081	59,812	191,380	18,781	450,756
계동판매율	68.70	83.53	90.96	53.53	73.66	60.34	48.10

자료 : 수산년감, 한국수산회, 1993.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소비 비율에 있어서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의 경우 국내소비가 67.69%, 수출이 32.31%로 나타나나 여기에는 원양 어획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근해 수산물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국내 소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비율(원양 어획물을 포함)

(단위 : 톤, %)

년도별	총 생산량	국내 소비량	수 출	비 율	
				A / B	A / C
1980	2,410	1,714	696	71.12	28.88
1985	3,103	2,236	867	72.05	27.95
1989	3,319	2,199	1,120	66.25	33.75
1990	3,275	2,217	1,058	67.69	32.31

자료 : 수산년감, 한국수산회, 1991.

2) 분배 비율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위판을 거쳐 산지에서 유통되는 비율은 전국적인 조사 통계가 없어 한국경제연구회가 1970년도 조사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8% 내외이고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기타 거래선을 통하여 소비 도시로 출하되는 량은 72% 내외로 보고 있다⁴⁾.

어종별로 생산지별로 이러한 비율로 분배되어 유통된다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소비지 출하로 나타나 수산물 유통상에 있어서 수송의 문제가 중요시 되지 않을 수 없다.

4) 한국 경제 연구회 「수산물 유통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 8. 31), P. 18 참조 상기 통계 자료는 24년 전의 것이나 수산물 용도비율의 추세로 볼 때 대량수요처나 가공업자가 산지어시장에서 직접 수매하여 내륙 도시로 출하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분배 비율에는 별로 변동이 없을 걸로 추정된다.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点과 補完 對策

3) 용도 비율

구 분	'79	'84	'89	'90	(단위 : 톤)
총 어획량 (A)	1,936	2,252	2,389	2,349	
선어 용도 (B)	1,150	889	613	437	
가공 용도 (C)	786	1,363	1,776	1,912	
가공유통비율(A/C)	41%	61%	74%	82%	
간 제 품	167	173	127	111	
냉 동 품	197	389	676	593	
통 조 림	79	140	142	110	
연 제 품	11	180	251	282	
염 신 장 품	32	8	26	21	
해 조 제 품	186	257	362	489	
기 타	115	218	192	306	

자료 : 수산청 제조과.

수산년감, 한국수산회, 1991.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용도별 비율을 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선어 유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가공용도 비율이 80% 이상으로 제고되고 선어 유통이 20% 내외로 그 비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통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연근해에서 생산된 어획물 중 80% 이상이 가공원료(냉동품 도 포함)로 공급되고 20% 내외만이 선어상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연근해 수산물 유통의 분배, 소비, 용도 비율(1990)

생 산 량	산지 유통 28%	소비지 유통 72%		(분 배 비 율)
	100%	국내 소비 67.69%	수출 32.31%	
양 육 량	선어유통 18%	가공용도유통 82%		(소비 비율)
				(용도 비율)

주 : 1. 분배비율은 산지위판장에서 일단 위판과정을 거친 수산물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소비비율은 원양어획물을 포함한 통계임.

이상의 수산물 유통 비율을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 水產物 流通은 消費地 출하 유통이 중요하며,

둘째, 水產物 流通은 加工用度로 공급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냉동품과 같은 저차가공 원료로 대부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鮮魚流通의 問題이다.

셋째, 水產物 流通은 국내 消費流通의 문제이다.

III 產地魚市場의 機能과 役割

1. 漁業經營의 特殊性과 產地 魚市場

水產業은 그 생산에 있어서 국지성과 계절성, 일시다획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漁業經營活動의 성과물인 어획물마저 강부폐성과 비규격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生產에서 消費에 이르는 단계의 流通接點에서 中間商人이 개재하여 그것이 生產者 및 消費者에게 불리한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점이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이며 수산물 유통의 개선방향은 이러한 다단계 유통단계를 어떻게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水產物 流通에 있어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要素이면서도 이제까지 檢討對象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 漁業經營의 특수성이다. 정부 당국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하면 선어류에 대해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거의 대부분이 양륙되고 있는 釜山, 仁川, 束草, 群山, 木浦, 麗水, 浦項, 馬山, 三千浦港 등 주요 10개 漁港에 대해서는 「어획물 양륙 港口에 관한 고시⁵⁾」 개정에 의거 이미 任意上場制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生產漁民에 의한 직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오히려 <표 3-1>의 統計에 의하면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어획되는 품종의 계통판매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책 당국자들이 이를 義務上場制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나 養殖 水產物의 系統販賣率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볼 때 계통판매율의 높고 낮음은 義務上場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위와 같이 任意上場제로 정책 전환하여 消費地 直出荷의 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에서 생산된 어획물이 產地魚市場을 통해서 유통시키지 않으면 안될 요인은 무엇인가? 漁業經營者나

<표 3-1> 주요 연근해 어획물의 생산 및 계통판매 동향

(단위 : 천톤)

구분	어 종 별	생 산 량		위 판 량		계 통판매율(%)	
		'91년	'92년	'91년	'92년	'91년	'92년
해 면 어 업	갈 치	95.6	87.3	95.6	87.2	99	100
	고 등 어 류	91.5	166.4	90.9	166.1	99	100
	쥐 치	70.4	34.8	68.9	33.6	98	96
	정 어 리	44.5	46.5	44.3	46.3	99	100
	참 조 기	37.4	39.6	37.3	39.6	100	100
	삼 치 류	24.7	8.2	23.8	7.6	97	93
양 식 어 업	오 정 어	109.9	139.7	106.8	135.1	97	97
	미 역	271.2	374.8	109.1	147.5	40	39
	굴	221.9	252.8	175.0	185.8	79	73
	김	145.0	163.6	65.3	62.1	45	38
	피 조 개	17.5	21.1	3.0	3.0	17	14

자료 : 수산년감, 한국 수산회, 1993, p. 103.

5) 수산청고시 제 90-16(1990. 8. 31)호에 의거 1990. 10. 1부터 산지위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로 직출하할 수 있는 지역이 종래 4개항에서 10개항으로 확대 실시.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點과 補完 對策

실지 從事漁民의 입장에서 접근해 본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漁業經營의 特殊性 때문에 產地魚市場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產地나 직출하를 통한 내륙지 도매 시장 상장 등 시장선택의 직접적인 요인은 될 수 없지만 수산업 생산 및 어획물의 특성이 항상 신속 대량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어업경영의 특수성을 들어본다면 연근해 어선어업의 임금체계가 짓가림제(보합제)로서 항차별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획물은 선주의 것이 아니고 선주, 선원의 공동소유로서 선주, 선원 협의에 의해 판매처(산지어시장)가 결정된다. 어획물의 판매도 반드시 선주, 선원 공동입회 하에 판매가 이루어지며 어획물을 판매처리한 어항에서 다음 항차 출어 준비도 하게 되며 판매대금의 분배 정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표 3-2> 짓가림제 근해어업의 공동경비에 포함될 비용 항목

어업비용	외끌이 대형기저	동해구기 저	서남구기 저	근해 안강망	동해구트롤	근해 유자망	근해 채낚기	근해 연승	잠수기	근해 통발
어구비	○	○	○	○	○	○	○	○	○	○
연료비	○	○	○	○	○	○	○	○	○	○
용기대	○	○	○	○	○	○	○	○	○	○
얼음대	○	○	○	○	○	○	○	○		○
소모품비	○	○	○	○	○	○	○	○	○	○
주부식비	○	○	○	○	○	○	○	○	○	○
후생비	○	○	○	○	○	○	○	○	○	○
수리비	○	○	○		○	○		○	○	○
사무비	○	○	○				○			○
판매비	○		○	○	○	○	○	○	○	○
감가상각비	○	○			○					
재해보상금	○									
공제료	○		○							
조세공과										

주 : 1. 어구비 : 조업중 파손된 어구의 부분대체 및 보망경비
 2. 수리비 : 조업중의 기관수리, 부속품 대체(대규모 수리시 선주부담, 부분수리시 공동경비)
 3. 공제료 : 선원공제료만 공동경비

자료 : 어업경영조사보고, 수협중앙회, 1993, p. 79 참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경영에 있어서 임금제도는 짓가림 임금제도⁶⁾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전통적인 임금제도가 지배하고 있는 연안어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있어 비교적 근대 임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근해어업에 있어서도 전업종이 짓가림 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경영의 현실이다.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매년 제도적으로 어업경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참고로 한다면 어업별 공동경비에 포함할 비용항목과 선주, 선원간 분배율, 선원분에 대한 직급별 짓가림(배분율) 형태를 1993년 어업경영조사보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해 보면 <표 3-2,3>과 같으며 연근해 어선어업의 『항차단위 경영기간 계산』과 짓가림 임금제 때문에 생산자에 의한 연근해 어획물의 소비지 직출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연근해 어업의 현실이다.

6) 어획고 또는 어획고에서 도중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차적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 선주 선원간에 배분하고 이차적으로 선원측 분배분을 직급에 따라 배분하는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전통적인 임금제도.

수산경영론집

<표 3-3> 짓가림제 근해어업의 노사간, 선원간 분배율

구 분	선원측 분배율 (%)	선원 직급별 배분(짓가림)율								
		단 위	선 장	기관장 선 원	일 반	갑판장	조기장	통신장 항해사	기관사	잠수부
외끌이 대형기저	45	짓	3	12.5	1	1.5	1.5			
대형기저 인천	45	"	3.5	2.5	1	1.5	1.5	1		
대형 트롤	40	"	3	2.5	1	1.4	1.4	1.7		
동해구기저	50	"	3	2.5	1	1.2	1.2			
서남구 울산	45	"	3	2.5	1	1.5	1.5			
	여수	50	"	2.5	1.5	1				
동해구트롤	45	"	3	2.5	1	1.4	1.4			
근해 안강망	인천	35	"	1.5	1.5	1				
	군산	35	"	1.5	1.5	1	1.2			
	여수	35	%	30	28	17	25			
	목포	35	짓	2	1.5	1				
근해통발	장어통발	50	"	2	2	1	1			
	충무	50	"	2	1.5	1				
	후포	45	"	1.5	1.5	1	1	1		
잠수기	부산	50	%	25	25					
	여수	60	"	17	17	17				
	충무	45	짓	22.5	22.5					
근해 유자망	인천	50	"	5	4.5	1		1	1	
	고성	45	73	27						
	삼척	40	짓	3	2.5	1	1.5	1.5		
	옹진	60	%	37	30	33				
	여수	40	짓	1.5	1.5	1				
	후포	45	"	2	1.75	1	1	1		
	삼천포	60	%	25	17.5	46	11.5			
	충무	50	짓	1.5	1.5	1.5	1	1.2		
근해연승	부산	50	"	1.7	1.5	1	1.2			
	서산	50	"	28	34	28				
	옹진	50	"	25	25	50				
	충무	60	짓	1.5	1.3	1				
	남해	50	11	1.5	1.5	1				
	군산	40	"	1.5	1.5	1.5	1	1.2		
근해 채낚기	속초	53	"	1.8	1.8	1	1.2	1.2	사무장 : 1.2	
	명주	53	"	2	2	1	1.2	1.2	요리사 : 1.2	
	울릉	53	%	19	19	10	13	13	사무장 : 14, 요리사 : 12	
	동해	53	짓	2	2	1	1.2	1.2		
	영일	53	"	2	2	1	1.3			

자료 : 어업경영조사보고, 수협중앙회, 1993, p. 80.

둘째로, 연근해 수산물은 移動性 無主物 共有資源으로서 局地性, 季節性, 一時多獲性으로 수급 조절이 불가능하고 고립 분산적인 특성을 가진다. 어업경영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생산된 어획물마저 강부패성, 비규격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신속 대량거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点과 補完 對策

셋째로, 선주가 선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내륙지 도매 시장으로 직출하한다 하더라도 생산어민이 직접 상장시킨 어획물은 산지어시장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유통 현실이며 소비자 직출하가 실지 생산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어업의 이상과 같은 특수성과 현실 여건 때문에 연안 임해지역 항구에 어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어업 전진기지가 필요한 것이며,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의 거의 전량이 산지어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2. 產地魚市場의 본질적 機能과 役割

생산 - 유통 - 소비과정의 구조가 농산물에 있어서는 집하기능과 가격결정 및 분산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이 내륙 대도시 소비지 중심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물은 어업생산과 어업경영의 특수성 및 수산물의 거래관행과 상품의 특성 때문에 연근해 어민이 생산한 어획물을 판매처리 할 어시장은 연안 임해지역의 항구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찍부터 연안 주요 항포구에 객주 조직이 침투하여 수산물 유통의 일의를 담당했던 것을 일제초기 당국의 수산시책에 의거 생산자 단체인 어업조합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산지어시장(위판장)을 운영관리도록 했던 것이며 그간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산지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객주를 배제하고 수산물의 산지 집하기능과 완전경쟁에 의한 객관적인 가격결정(경매)기능 및 소비자 분산기능을 연근해 생산어민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어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 위판장(공동어시장 포함)과 각 시도 지회별 위판실적은 <표 3-4>와 같다.

水協 系統組織이 產地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魚市場은 총 214개이며 1993년 한해 동안에 1,700천톤의 연근해 어획물을 판매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產地 水產物 市場機構이다. 水產關係法令⁷⁾에 의한 水協 委販場은 양류항구와 판매장소를 제한하여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표 3-4> 각 시도 지회별 수협 위판장 지정 개수와 위판실적(1993) (단위 : 톤)

구 분	산 지 시 장 기 구				계통판매량	개 소 당 평균 판매량
	계	공판장	위판장	공동어시장		
계	214	1	212	1	1,700,489	7,946
부 산	4		3	1	476,664	119,166
경 기	18	1	17		46,536	2,585
강 원	18		18		75,087	4,171
충 남	18		18		22,323	1,240
전 북	12		12		75,366	6,280
전 남	80		80		400,880	5,011
경 북	13		13		82,672	6,359
경 남	42		42		491,104	11,693
제 주	9		9		29,856	3,317

자료 : 1. 수산년감, 한국수산회, 1993.

2. 水產物 계통판매고 통계년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

전량을 수협위판장을 통해서만 流通시킴으로서 수산자원 보호 및 부정어업을 방지하는 데 두고 부차적으로 일시 다량으로 양육되는 어획물의 집하 및 신속한 분산처리로 원활한 流通 機能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産業經濟的 입장에서 볼 때 產地魚市場의 機能과 本質的 役割은 우리나라 水產業에 있어서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어업의 경영상의 특수성 때문에 생산된 어획물은 반드시 沿岸港口에 소재하는 魚市場을 이용하여 판매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수산업 생산 및 어획물의 특성이 항상 신속 대량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產地魚市場은 연근해 어민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생산한 어획물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판매 처리할 수 있도록 어획물의 집하 및 완전경쟁에 의한 개관적인 가격결정과 신속한 분산처리로 流通에 원활을 기하고 그 곳으로부터 그들이 다음 출어에 필요한 유류, 열음, 선수 품등을 지원받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과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IV. 水產物 流通施策의 현실적인 문제점

1. 연근해 水產物의 流通 단계 단축

1970년대 이후 농업생산이 본격적인 상업농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의 근대화에 뒤따르지 못하는 流通의 전근대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에서 소비과정에 이르는 다단계 유통접점을 단축하여 유통비용과 유통시간을 절감하려는 유통합리화 운동이 적극 전개되었으며 水產物에 있어서도 양식수산물중 김에 대해서는 수협이 주도하여 어장을 집단관리하고 생산을 조직화 하여 수출용 생품만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였던 유통체제가 수출이 중단되고 漁業權의 어촌계 이양과 더불어 수협의 판매사업이 경매제도에 의한 내수용 판매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객주 조직과 수협, 생산어민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제5공화국 출범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유통시책이 養殖水產物任意上場制이며 선어류에 대해서도 釜山, 仁川, 群山, 東草港에 대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직출하제 도입⁷⁾ 등 이 유통단계 단축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책의 일환이었다.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면 상품성도 제고되고 流通費用도 절감된다. 그러나 당국이 상식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추진했던 流通施策이 희망했던 사항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착되어 시행착오만 일으켰으며 오히려 수취가격이 낮아져 생산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바로 직시하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농협의 협동 출하반을 통한 직출하 운동이나 내륙지 공판장과 생산자 직출하 운동이 그렇고 釜山, 仁川, 群山, 東草港의 선

7) 관련 법령은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 보호령 제19조 및 제21조.

8) 수산청 고시 제80-14(80. 8. 30)호에 의거 어획물의 양류항구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하여 소비지 도매시장 직출하제 도입.

어류 임의상장제 실시와 大川, 木浦, 麗水, 浦項, 馬山, 三千浦港 등 10개 항으로의 확대 실시와 수협 중매인이나 반출상의 중간 객주상(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한 內陸地 都賣市場 上場 등의 경우가 그렇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유통단계의 단축 운동은 그것이 실지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경우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유통단계 단축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시책은 먼저 소비자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기구가 완전경쟁에 의해 도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추진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水產物 自由販賣制와 產地魚市場 機構 개편

당초 1983. 1. 1. 부터 시행키로 했던 養殖水產物 任意上場制가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1985. 12. 12 실시한 종합 공청회의 결과를 수산청이 수렴하여 1997년 이후에나 재검토키로 했던 水產物 任意上場制가 1994년도 12월 1일로 앞당겨 시범실시 되었으며 1997년까지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水產物 自由販賣制는 養殖水產物 任意上場制 시책 추진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93년 7월『新經濟五個年計劃』의 행정규제 개혁부분 농림수산분야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1994년에 시범 실시한 후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97년까지 전면 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현행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거래제도를 자유판매제로 전환코자 하는 이론적 배경은 수산물 유통제도가 산지 위공판장과 內陸地 都賣市場과의 중복 상장에 따른 도매가격이 이중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통의 다단계 및 고마진 초래와 유통시간의 지연에 따른 상품가치가 훼손되며 생산 어민의 소비자 직출하나 기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발하는 데 저해가 되므로 현행 산지 거래제도를 자유판매제로 전환하고 수산청고시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당국이 유통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유판매제 자체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漁船漁業 經營을 농업경영과 동일시하고 수산물과 농산물을 동일시하여 內陸地 都賣市場에 기준을 두고 농산물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하려는 일부 농업경제학자들의 이론이나 접근방법이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수산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크나큰 문제점이다. 정작 수산업의 입장에서 수산물 생산과 어업경영의 특수성, 수산물 거래 현실과 어획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수산업 진흥과 연근해 생산어민을 보호해야 할 수산당국이 본말이 전도된 현실성 없는 이론으로 그간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논쟁이 있긴 하였지만 지금 별 문제점 없이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產地魚市場 制度를 발전적인 대안없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產地魚市場의 본질적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쇄신위원회의 농림수산부분 개혁대상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으로 밀고 간다면 다음에 닥쳐올 시행착오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현행과 같은 產地魚市場 機構와 機能이 한번 무너지면 복원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은 이번 농안법 파동에 비추어 예측이 가능하리라 본다. 농안법에 기초한 市場機構가 產地에 들어와서도 안되며 농안법 규정에 의한 仲都買人 制度가 產地魚市場에 도입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再改定 農安法 규정에 의한 仲都買人 制度는 잠정적으로 都賣市場의 기능을 완전경쟁에 의한 객관적인 도매가격 결정 기능보다는 중도매인이 객주상 영업을 겸업하면서 객주조직을 통해 產地로부터 많은 물량을 都賣市場으로 집하시켜 시장내의 객주상회에서 신속 분산처리하는 기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都賣市場에 상장되는 물량의 경매에도 참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產地魚市場 중매인의 객주화로 현재와 같이 완전경쟁에 의한 객관적인 도매가격(경락가격)결정 기능과 신속 대량 처리기능이 무너지고 객주의 가격 및 물량조작으로 적정가 및 공정거래 여건이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이다. 중매인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 수집하기 위하여 어획물 판매권 독점을 전제로한 악성 고리자금의 대어민 침투와 상고선을 동원하여 어장 현지까지 파고들어 어획물을 인수하고 產地魚市場에 양륙된 수산물은 魚市場 부근의 객주상회에서 중도매인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內陸地 都賣市場과 같이 오히려 유통단계가 1~2단계 늘어나면서 상회수수료와 魚市場 판매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등 일제 및 해방직후와 같은 옛날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3. 公平性과 公正性의 問題

연근해 水產物의 任意上場制는 內陸地 都賣市場이 市場經濟가 이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에 의해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 전개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產地魚市場 까지 부정적인 시각에 두고 유통시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바 수산물에 있어서 자유판매제 실시는 이의 시정과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內陸地 都賣市場의 都小賣 分離

市場經濟가 이상으로 하는 유통방식은 완전경쟁이다. 완전경쟁이 이루어질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경우 수요자나 공급자들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市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독과점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번 농안법 파동때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크게 잘못된 양 말썽이 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만큼 內陸地 都賣市場은 크게 잘못된 채 방치되어 왔음을 뜻한다. 內陸地 都賣市場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농안법 파동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그간 당국의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각종 유통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생산자에게 실망과 불신만을 가져다 준 것도 內陸地 都賣市場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파생된 農水產物 流通上의 왜곡현상이었다. 內陸地 都賣市場 중도매인들이 객주식 영업을 겸업하면서 객주조직을 통해 產地로부터 農水產物을 都賣市場으로 집하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매영업을 하는 수명의 객주종상을 거느리고 이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유사도매 행위를 자행하는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点과 補完 對策

등 탈법 형식경매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여건하에서는 중도매인인 중간 객주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값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유통단계나 流通 마진을 줄이기 위해 직접 상장 시킨 農水產物이 항상 제값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流通稅制의 公正 公平한 적용

지난 1983년 養殖水產物 任意上場制 거론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청와대 당국이 재무부와 관련부처를 조정하여 任意上場制 실시 이전에 유통세제를 개선코자 시도하였으나 세수결합등 문제점이 많아 이의 실시를 잠정 보류하고 청와대가 주관했던 본건 유통시책 추진을 관련부처로 하여금 관련부처의 판단에 의거 재량껏 추진토록 했던 사항을 상기한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任意上場制로 전환시키면서 객주상회와 수협위판장을 경쟁시키려면 적어도 똑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는 수협 중매인이 객주종상보다 또는 수협위판장이 객주상회보다 경쟁면에서 대등하거나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에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社會正義 上으로도 일의 추진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流通稅制面에서 다음과 같이 엄청난 불균형이 심화되어 객주상회의 유통기능은 활성화되는 반면 생산자 단체의 유통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1> 流通稅制의 比較

구 분	수 협 중 매 인	객 주 종 상
세 무 보 고 업 태 납 세 번 호 유 무 부 가 가 치 세 종 합 소 득 세 과 표	취급고 전액 보고(보고의무자 수협) 반출상 또는 중개 서어비스업 영업자 납세번호 취득후 영업 수수료 납입액의 10% 전액 노출과세	비노출 은폐 반출상, 중개 또는 소매 - - 비노출 은폐

3) 연근해 水產物 중복상장 문제

產地 출하단계에서 수협위(공)판장 경매과정을 거쳐 소비지로 출하된 水產物을 소비지 都賣市場에서도 재차 경매과정을 겪어야 하는 모순이 연근해 水產物 流通制度 개선대상의 과제가 되어 있다. 사실 產地 水協 위판장과 소비지 都賣市場의 중복 상장에 따른 二重 都賣價格 형성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產地 위판장에서는 낙도·벽지항의 위판장에서 일단 매매(경매)를 거쳐 대도시 어항으로 재양륙되는 물량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면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⁹⁾. 수산물 도매거래를 전담하는 공영시장인 수협 산지 위(공)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교통정리는 일찍 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여 지적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전개하여 주장하는 사항이 객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水產物 都賣價格을 결정하는 市場機構는 内陸地 都賣市場이어야 하기 때문에 内陸地 都賣市場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최선의 유통과정이고 產地魚市場의 경매과정은 어민에 피해만을 주는 필요악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전개

9) 수산자원 보호령 제21조 제2항.

되는 유통이론이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접근 방법으로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현실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아주 유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1992년 말 현재 전체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 계통판매량은 1,532천톤<표 2-1 참조>에 이른다. 이중 내륙지 공영도매시장의 재상장 경매과정을 통해 분산처리된 물량은 371천톤으로 전체 물량의 24.5%에 불과하며 수협 내륙지 공판장 총취급분 175천톤¹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양류 수산물의 35.2%에 해당되는 물량뿐이다.

<표 4-2>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별 운영현황 (단위 : 톤, 백만원)

도 매 시 장 별	1991		1992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41,121	512,054	371,094	577,619
노 량 전 수 산	162,237	204,619	173,126	240,304
서 울 전 해 산 물	34,821	137,972	41,229	132,686
강 동 수 산	103,112	119,782	110,120	146,218
평 주 수 산	8,578	5,718	8,462	6,684
대 전 수 산	13,424	13,321	17,369	15,839
이 리 수 산	1,005	1,254	749	1,032
포 항 수 산	2,356	3,770	2,962	4,857
울 산 중 앙 수 산	6,393	6,973	7,045	8,009
울 산 전 해 산 물	718	3,302	942	4,175
경 주 수 산	2,890	5,068	2,796	5,445
충 주 수 산	1,026	784	1,141	845
전 주 수 산	1,302	3,024	1,362	3,106
청 주 수 산	2,600	2,680	3,611	3,779
대 구 전 해 산 물	659	3,787	990	4,640

자료 : 수산청 어정과

둘째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 3-1>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근해 어선어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어획물의 계통판매율은 거의 100%에 가까우나 養殖水產物이나 共同漁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의 계통판매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沿近海 水產物 流通의 중심 과제는 漁船漁業과 관련되는 鮮魚流通의 문제이다.

셋째로, 產地魚市場을 통해서 流通된 水產物의 용도비율 분석결과 20% 내외만이 선어 상태로 소비가 되고 80% 내외가 가공용도로 소비가 되고 있었다. 저온저장 시설을 겸비한 가공업자의 수급조절 기능이 水產物 流通에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분석결과 產地魚市場의 기능과 역할은 沿近海 漁業의 사활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內陸地 都賣市場의 기능과 역할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으며 연근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產地魚市場에 기준을 두고 개선해 갈 것이나 內陸地 都賣市場에 기준을 두고 개선해 갈 것이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자료 : 수산청 어정과, 수협중앙회 조사부

產地와 消費地 공영시장의 중복 상장문제는 제도개선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임의선택권만 생산어민에게 부여하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4) 水協委販場과 客主商會간의 경쟁 및 서비스 개선

수협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산지 위(공)판장은 연근해 생산어민과 연근해 어업의 항구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 임해지역의 항구에 개설되어 있는 產地 魚市場 機構이다. 그런데 產地 魚市場 機構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켜 전개되는 유통시책에서 우리는 너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水產物 都賣價格 형성의 주체를 內陸地 都賣市場에 두고 이론 전개를 하다 보니 產地魚市場 機構가 대다수 생산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통단계로 인식되고 수협을 위해 만들어진 市場機構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產地魚市場 機構는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으며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內陸地 都賣市場 지정도매인과 객주상회를 경쟁시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유통이론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매제도를 강화하고 都賣市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產地水產物 자유판매제도의 주된 추진방향은 현행 產地魚市場 機構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고 객주상회와 경쟁시켜 수협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산청고시도 폐지한다는 유통시책의 방향이 너무나 객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단위 產地魚市場(수협위판장)을 다수의 객주상회와 경쟁시킨다면 연근해 수산물의 產地 集散機能이 약화되고 產地 集散機能의 약화는 완전 경쟁에 의한 도매가격 형성의 주체성이 무너져 어민 수취가격 제고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실 서비스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수협위(공)판장의 서비스 개선문제는 沿近海 漁船漁業을 經營하는 어민이나 종사 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 현장이 연안 임해지역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이며 漁船이 省力化 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수송거리에 기준을 두고 양륙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판장의 수용태세와 어가수준, 유류, 얼음, 식수, 기타 선수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선주와 선원이 협의 결정하기 때문에 각 연안지역 수협위판장에서는 이들 물량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內陸地 都賣市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계자료로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魚市場인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군산수협위판장, 목포수협위판장의 연도별 위판실적을 대비해 본다면 <표 4-3>과 같으며 이들 위(공)판장이 양륙물량 확보를 위해 얼마나 힘겨운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산경영론집

<표 12> 서해안 지역의 주요 어시장별 위판실적 대비표

(단위 : 톤, 백만원)

공판장	구분	연도별					
		'76	'86	'90	'91	'92	'93
인천	위판물량	52,738	67,376	51,004	53,812	42,609	32,545
	위판금액	9,839	60,274	63,431	82,152	83,332	75,531
군산	위판물량	50,756	50,789	50,341	59,544	54,442	65,052
	위판금액	7,241	37,671	56,687	74,804	71,544	74,551
목포	위판물량	50,149	55,695	52,785	57,784	55,453	46,319
	위판금액	6,532	43,096	73,852	84,354	104,147	96,825

자료 : 수협중앙회, 水產物 계통판매고 통계년보, 1977 - 1994.

V. 自由販賣制 실시에 따른 補完對策

연근해 水產物의 任意上場제는 內陸地 公營都賣市場이 완전 경쟁에 의해서 都賣가격이 결정되고 공정거래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운영관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기된 이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유통시책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 농안법 파동결과 중도매인(객주조직)의 시장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연근해 수산물을 內陸地 都賣市場에 기준을 두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별 문제점없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행 產地魚市場 制度가 붕괴되어 沿近海 漁業經營에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숙제거리¹¹⁾가 발생된다면 당초 아니 시작함만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근해 수산물의 자유판매제 전환에 따른 전제조건으로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첫째, 內陸地 都賣市場과 產地魚市場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內陸地 都賣市場으로서는 產地魚市場이 수행해줘야 될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대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근해 생산어민과 수산업 진흥을 위해 產地魚市場은 필수적인 水產物 市場機構이며 이를 발전적으로 육성하고 기능을 보강해 가야 하기 때문에 魚市場이 개설된 항구 내에서는 해산물상(객주상)에 의한 유사도매 행위만 금지시키고 생산어민에 대한 소비지 직출하, 대량 거래처와의 직거래, 소매, 직판,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공급 등 생산자가 새로운 유통경로를 자의로 개발하고 판매선택권을 자율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근해 수산물의 上場制度는 產地魚市場을 기준으로 流通 主體性이 확립되어야 하며 생산자가 원할 경우 소비지 출하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장판매를 원하는 생산자에 한해 상장판매를 허용토록 하며,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수산물 위판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협이 주관하여 어획물의

11) 산지어시장을 기준으로 한 연근해 수산물의 도매가격 형성의 주체성이 무너지고 해방직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생산어민의 상장어시장 결정의 임의선택권이 오히려 말살되고 중도매인(객주상회)을 경유하여 어시장에 상장시키고 상회수수료와 어시장 판매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내륙지도매시장과 똑같은 태로 돌아가 결과적으로는 유통단계가 1~2단계 늘어나면서 유통비용과 생산어민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돌아갈 것이다.

自由販賣制 전면 실시에 따른 問題點과 補完 對策

공동처리, 가공체제의 확립으로 고부가가치 유효수요 상품생산과 產直去來에 의한 어획물의 확대 공급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수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체제의 기능 강화와 產地魚市場 機能의 多樣化로 수산물 도매가격 형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대량 수요처 및 협동조합간 제휴를 통한 產直販賣 體制를 구축하여 產地魚市場 機構와 產直去來 形態의 市場機構가 조화를 이루어 양륙 물량의 적정 배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生活協同組合과 계약에 의한 產直販賣 體制 구축
- 生產者 團體와 消費者 團體간에 골드체인 망(Cold – Chain – System) 구축.
- 수산물 장단기 비축에 의한 주년 공급체제망 확충
- 생산자 단체의 대도시 수산물 백화점, 집배센터, 직판장 및 슈퍼마켓 공급망 구축으로 산직판매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產地 水產物 자유판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협중앙회나 수산청에서 이미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고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검토가 없었던 부분에 한해 다루었음을 첨언한다.

VII. 結論

沿近海 水產物의 流通은 農產物 流通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채 연근해 어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農產物 流通理論에 험몰되어 함께 끌려가고 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어 필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근해 어획물 자유판매제로의 정책 전환에 따른 보완대책과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당국이 생산어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販賣經路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流通經路를 개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거래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의 사적 고찰이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생산어민에게만 販賣經路의 임의선택권이 자유롭게 부여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 자유라는 용어를 빌려 오히려 생산어민의 임의선택권이 축소 내지 밀실되거나 유통시책의 추진방향이 公平性과 公正性 내지 客觀性의 缺如로 인해 생산어민의 권익보다는 객주 조직의 영업 기반만 확충시켜주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생산어민에게만 販賣經路의 자유로운 임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책 명칭을 自由販賣制가 아닌 任意上場制로 바꾸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현행 產地魚市場 制度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연근해 水產物의 重複 上場制度의 개선과 유통단계의 단축시책이 현실적이 아니거나 획일적이고 경직된 이론이 아닌 생산어민 스스로가 자기 실정

과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流通經路¹²⁾ 중에서 생산어민이任意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연근해 水產物 流通機構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개선 방향은 수산업의 제반 특성상 產地魚市場에 기준을 두어 水產物 都賣價格 形成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에 의한 직송, 직판, 직거래 형태의 산직판매 기능을 강화하여 현행 產地魚市場 機構와 產直去來 形態의 새로운 市場機構가 조화를 이루어 揭陸水產物의 適正 配分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參 考 文 獻

- 韓國經濟研究會, 水產物 流通過程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97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바다 및 漁村開發 方向에 관한 政策課題, 198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養殖水產物 產地去來 制度 改善方案, 1985.
 水產廳, 水產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0 – 1993.
 水協中央會, 水協 調查月報, 1990 – 1993, 각 1월호.
 水協中央會, 水產物 系統販賣高 統計年報, 1976 – 1993.
 現代海洋社, 現代海洋, 1989.11월호, 1993.12월호, 1994. 6월호.
 韓國水產經營學會, 水產經營論輯 제18권 제2호, 1987.
 韓國水產經營學會, 水產經營論輯 제20권 제2호, 1989.
 韓國水產經營學會, 水產經營論輯 제21권 제1호, 1990.
 農林水產部, 漁業生產量 統計, 1992.
 韓國水產會, 水產界, 1990.
 韓國水產會, 水產年鑑, 1990 – 1993.
 韓國水產新報社, 水產關係 法令集, 1993.
 韓國島嶼研究會, 島嶼地域의 開發現況과 未來像, 1989.
 圖書出版 水產, 양식산업, 1994 7월호.

12) 생산어민이 산지 위(공)판장으로 어획물을 양육시켜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 ① 生산자 → 소매, 직판(소비자)
- ② 生산자 → 산지위(공)판장 →
 - 소비자
 - 중매인 → 소비자
 - 중매인 → 소매상 → 소비자
 - 중매인 → 내륙지 도매시장 → 중도매인 →
 - 소비자
 - 소매상 → 소비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③ 生산자 → 내륙지 도매시장 → 중도매인 →
 - 소비자
 - 소매상 → 소비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④ 生산자 → 산지 (위)공판장 → 수협매취(자체 비축 또는 정부 비축) →
 - 직배센타, 수산물백화점, 직판장 → 소비자
 - 소매상 → 소비자
- (골드체인망 구축)
- ⑤ 生산(계약생산) → 산지수협수집저장 → 생활협동조합(대량수요처 포함)
 (골드체인망 구축)

Problems and complementary Measures from the Overall Enforcement of Free Market system

–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

Kim, Seung

Abstract

From now on, the direction of fishery products circulation measure should be improved the system to give just the right of free choice of sale route like retail, direct sale, direct dealings and direct shipping only for fishermen to produce them diversifying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current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to prepare the fishery internationalization,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Practically wholesale market in land and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have the different function and role, the organization of wholesale market in land can't substitute the essential function and role which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should perform.

So far, fisheries cooperatives as a managing subject of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have depended on the consignment sales and purchases of fishery products but, from now on, it should be explore the widespread supply way of fishery products by producing value-added fishery products that should bring higher demand from the consumers, producer-consumer direct marketing system through not only consignment sales but also direct sales that common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system of fishery products under the management of FC has been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the ideal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y production circulation organization is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fishery retail price leader based on the standard of market in the fisheries production due to existing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accordingly, to harmonize the market organization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sales and direct dealings form by producer and group of producers with market organization in the fisheries production, and to make the condition to do the appropriate distributive function.